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2. 16(금) 10:00

제248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가족국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추 병 수

서울특별시 금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468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4. 2. 2.
- 라. 회부일자 : 2024. 2. 2.

2. 제안이유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부식비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경로당 보조금 지원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부식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2호)
- 나. 경로당 보조금 지원 조항 정비(안 제6조제1항3호)
- 다.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제2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예산 조치

5. 검토의견

가. 개정 이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추가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임

나. 주요 내용

- 1) 부식비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2호)
 -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부식비 지원 근거를 신설함
- 2) 경로당 보조금 지원 조항 정비(안 제6조제1항3호)
- 3) 띄어쓰기 정비(안 제2조제2호)

다. 검토의견

- 본 개정안은 「노인복지법」 제47조에 따라 경로당 부식비 지원을 추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범위에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며, 고령화 복지수요에 대응한 적절한 지원으로 편안하고 안정된 경로당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관계법령

노인복지법

[시행 2023. 12. 14.] [법률 제19449호, 2023. 6. 13, 일부개정]

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

[시행 2023. 12. 14.] [대통령령 제33901호, 2023. 12. 5, 일부개정]

제24조(비용의 보조)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7. 30., 2007. 12. 13., 2011. 12. 8., 2017. 9. 5.>

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2. 법 제34조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4.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5.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
 6.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5. 12. 27., 2011. 10. 26.>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27., 2012. 8. 3.>